

## 버스유가보조금 신한카드 (법인체크)



### 버스유가보조금 신한카드 종류

#### 경유

- **거래카드** : 차량당 발급되는 주유량을 기록하는 카드(차량별 1매)
  - 일반주유 거래카드 : 일반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거래카드로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 반드시 버스유가보조금 결제카드로 결제가 필요
- **대체카드** : 거래카드 분실 및 발급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카드(차량 30대당 1매)
- **결제카드** : 일반주유 거래카드 주유량을 주유소에 대금 지급하는 결제카드
  - ※ 결제즉시 연계된 통장에서 잔액이 출금(소액신용공여불가, 이용가능 은행 : 신한은행)

#### CNG

- **결제카드** : RFID로 기록한 충전내역(외상거래내역)에 대해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카드
  - ※ 결제 즉시 연계된 통장에서 잔액이 출금(소액신용공여불가)
  - ※ 사업자번호당 1매만 발급, RFID 발급은 거래 충전소 또는 통합관리시스템(1644-8487)에 문의

#### 수소

- **거래카드** : 차량당 이용하는 충전량 등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카드(차량별 1매)
  -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하며 해당 거래내역은 수소버스유가보조금 결제카드로 결제 필요
- **결제카드** :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한 거래카드/RFID 충전분에 대해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카드
  - 결제즉시 카드와 연계된 통장에서 출금(소액신용공여불가, 이용가능 은행 : 신한은행)
  - RFID 발급은 거래 충전소 또는 통합관리시스템(1644-8487)에 문의

### 버스유가보조금 신한카드 주요 서비스

- 일반주유 버스유가보조금 결제카드 이용시 실시간 유가보조금 지급
- 연회비 면제
- 유가보조금카드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차량별 주유내역 관리 ([www.busc card.co.kr](http://www.busc card.co.kr))

### 카드 이용 안내

- 유가보조금 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단체 방문 및 서류접수 불필요
- 차량 거래카드/RFID를 사용하여 주유량을 남기고 주유소와 확인된 결제일에 맞춰 결제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CNG는 RFID만 가능)
- 외상거래내역 결제 시 연계된 은행계좌에서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회사부담금만 인출
  - 거래카드/RFID에 기록된 금액만큼 결제가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은 승인거절

※원거리 주유소 결제를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온라인 결제가능([www.busc card.co.kr](http://www.busc card.co.kr) 버스사업자 로그인)  
 ※일반 업종에서 법인체크카드로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현금 및 기타 결제 수단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지원불가
- 거래카드/RFID 일 4회 限 사용가능
- 1시간 이내 재주유 또는 재충전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급

### 버스유가보조금 신한카드 신청방법

- 신규발급 우편접수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18층 신한카드 법인영업3팀 유가보조금 담당자
- 카드관련 문의 : 경유 1566-7189, CNG/수소 1644-8487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안내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법인신용등급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변경안내

- ※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7년 07월 24일)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해외이용 확인사항

-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 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 신한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신한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신용 0.18%, 체크 0.2%)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거래미화금액 × 전신환 매도율<sup>1</sup>) + 국제브랜드 수수료<sup>2</sup> + 해외서비스 수수료<sup>3</sup>
    - (1) 전신환 매도율: 접수일의 신한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 (2) 국제브랜드수수료: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 매도율
    - (3) 해외서비스수수료: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신용 0.18%, 체크 0.2%)) × 전신환 매도율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DCC)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DCC) 차단을 원하시는 경우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앱 > 편>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일부 해외 가맹점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사용 시간 제한

- ※ 각 은행/증권사 전산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시간대(23:30~07:00)에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각 기관별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반환 기준

-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 한 날 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년도에 해당)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되며, 제휴 연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회비 반환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시에는 계약해지 날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 ※ 계약을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모바일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 신한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카드대금 결제방법 참조
- ※ 세부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 법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50627-Dcp-001호(2025.06.27)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인
신용카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대표자/대리인/이용자/관리자 각 1부) ③ 실체소유자 확인서류 1부 ④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대표자/이용자/관리자 각 1부) ③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① 연대보증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② 주주명부 또는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
체크카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대표자/대리인/이용자/관리자 각 1부) ③ 실체소유자 확인서류 1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대표자/이용자/관리자 각 1부)	해당사항 없음
참고	① 법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만 유효    ②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 추가발급일 경우 생략 가능    ③ 개인인감 날인 시 개인인감 증명서 첨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300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07년 03호

▶ 필수 기재사항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완료됩니다.

법인명	한글명			법인등록번호	-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영문명	* 공백포함 최대 21자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본사주소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본사연락처	직장전화	( ) - ( )	팩스	( ) - ( )			
	대표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영문성명					국내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공동대표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영문성명					국내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요청한도	일반한도	만원		특화한도	만원		제약약정한도	만원
사업장정보	사업장명	한글명	영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자정보	담당자명	직장전화	( ) - ( )	휴대전화	( ) - ( )		
	사업장주소					E-Mail	@	
결제정보	청구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청구( <input type="checkbox"/> 신규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존 사업장 [B ])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청구			명세서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 + E-Mail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1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23일 <input type="checkbox"/> 27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 * 1~27일 중에서 선택						
	결제은행	<input type="checkbox"/> 신한은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계좌번호			
	계좌종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법인) 계좌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계좌			카드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 선택 기재사항 ※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택 기재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카드 신청 발급에 대한 업무를 직접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영문성명	휴대전화	( ) - ( )	-		국내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부서명	직위	직장전화	( ) - ( )	-	이메일	@	
연대보증인	한글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영문명			채무자와의 관계			국내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우편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휴대전화	( ) - ( )		
	직장주소					직장전화	( ) - ( )	
	자택주소					자택전화	( ) - ( )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희망한도의 120%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희망한도가 감액 승인되는 경우 보증한도는 감액 승인된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금	만원
	보증기간	※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회원한도 승인 후 최초 발급되는 법인카드 신규일로부터 _____년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연대보증인 :	※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확인함 (인) 또는 서명
	보증계약 승인사항	1. 본인은 신청인이 신한카드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받고, 약관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동 약관상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숙지하고 동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2. 본인은 신청인이 약관에 따라 귀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신청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연대보증인 :	(인) 또는 서명





## ▶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

※ 아래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명의 구분	발급매수 / 요청한도	국내외 구분
카드 상품 선택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법인 명의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명의	매 / 만원
	체크카드	<input type="checkbox"/> 법인 명의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명의	매 / 만원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일반 [ <input type="checkbox"/> 포인트형 ( ) <input type="checkbox"/> 마일리지형 ( )] <input type="checkbox"/> 결제전용 [ <input type="checkbox"/> 항공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통신 <input type="checkbox"/> 후불하이패스 <input type="checkbox"/> 주유 ( <input type="checkbox"/> GS <input type="checkbox"/> SK <input type="checkbox"/> S-OIL <input type="checkbox"/> 범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국제브랜드 사용 시 연회비가 추가되며, 해외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input type="checkbox"/> 국내전용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겸용 :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card <input type="checkbox"/> UPI(은연)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JCB
체크카드	<input type="checkbox"/> 기본 [ <input type="checkbox"/> 신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OK캐쉬백+ <input type="checkbox"/> 체인지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가기능 - 현금카드(신한은행)		
추가 기재사항	주유전용	차량번호 ( )	유종 ( <input type="checkbox"/> 휘발유 <input type="checkbox"/> 경유 <input type="checkbox"/> LPG)
	후불하이패스	차량번호 ( )	
서비스	해외원화결제 (DCC) 차단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 신청 선택 시 해외원화결제(DCC)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추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해외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3~8%)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	부서명	한글명	영문명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직장전화 ( )	휴대전화 ( )	- <input type="checkbox"/> SMS
	주소			이메일	@
이용자명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영문성명	* 여권상의 영문명 기재 * 공백 포함 최대 21자	휴대전화 ( )	<input type="checkbox"/> SMS	국내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비거주
	부서명	직위	직장전화 ( )		이메일
	주소				@

**신한카드(주) 귀중 (이용자명의 법인카드 신청 시)**

- 본인은 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한카드 연회비, 카드발급 수수료, 이용 수수료(카드사용료, 지급기 사용료 등), 법인회원 약관 및 서비스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동의하였기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신청인 또는 본인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제공하며, 신청인 또는 본인의 계좌를 통해 카드결제금액을 자동이체 및 즉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귀사가 본인의 신용정보(연체정보, 법인카드보유정보 등)를 '이용자명의 법인카드'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법인에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

- 당사는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약관 및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음을 확인하고, 동 약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법인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당사는 상품설명서의 내용 및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당사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제공하며, 당사의 계좌를 통해 기존 발급받은 카드를 포함한 카드 이용 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연회비, 마이니스 포인트, 카드 이용 관련 채무 일체 금액을 자동이체 및 즉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항에 근거하여 신한금융그룹내 지주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는데 동의합니다.
- OK캐쉬백 제휴카드 회원 : 당사는 SK플래닛(주)가 제공하는 OK캐쉬백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 신청합니다. 당사는 OK캐쉬백 서비스 법인회원 특별약관(약관참조)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여행자보험 : 신한카드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는 신한카드가 행사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신한카드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카드 가입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제24조의 11) 및 약관 제7조에서 정한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고객확인을 위해 신분증(개인), 주주명부(법인)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보/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본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법인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법인명(명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년	월	일		법인인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방문판매 여부 <input type="checkbox"/> ※ 방문판매하신 경우 체크해 주세요.							

※ 필수 기재 사항 (접수직인 작성)

법인인감 및 본인확인/  
동의사항 안내직인 (인) 또는 서명

※ 필수 기재 사항 (접수직인 작성)

연대보증인 본인 및 자서확인/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안내직인 (인) 또는 서명

계	책임자	전결권자





## ▶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

※ 아래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드 상품 선택	유종 구분	<input type="checkbox"/> 경유 <input type="checkbox"/> LPG <input type="checkbox"/> CNG <input type="checkbox"/> 수소		
	차종 구분	<input type="checkbox"/> 고속( <input type="checkbox"/> 우등,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시외 <input type="checkbox"/> 시내 <input type="checkbox"/> 농어촌 <input type="checkbox"/> 마을 <input type="checkbox"/> 전세		
	브랜드 구분	<input type="checkbox"/> LOCAL(국내전용)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결제	<input type="checkbox"/> 거래	<input type="checkbox"/> 대체
	발급 매수			
	기타			

※대체카드는 차량 30대당 1매가 발급됩니다.(30대 미만일 경우 1매 발급)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

- \* 거래카드는 신용카드 등 결제기능이나 지급기능이 없이 주유소에서의 주유량을 확인하는 기능만 있는 카드입니다.
- \* 카드사는 버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실·훼손 시에 일시 사용이 가능한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결제카드는 거래카드로 확인된 주유량에 대해서 지불기능을 갖는 카드로, 카드사가 발행하는 법인체크 카드를 말합니다.
- \* 버스사업자는 거래카드(대체카드 포함. 이하같음)로 확인된 주유량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제카드로 결제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직접 또는 거래주유소의 요청에 의해 거래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버스사업자는 유가보조금카드의 분실·도난·훼손 시에는 즉시 발급 신청을 하고 필요시 개별 정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 \* 버스사업자는 거래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서명해야 하고, 자신이 거래카드를 교부하여 사용을 허락한 소속 버스기사 및 기타 임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거래카드를 보관,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 버스 사업자는 거래카드의 부정사용 또는 분실·도난, 위변조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위변조의 경우 버스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카드사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거래카드에 의한 주유량 확인 서비스 및 기타 거래카드 관련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사항은 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거래카드에 적용되며, 결제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회원규약(체크카드 법인회원규약 및 개인회원규약 기타약관 포함)이 적용됩니다.

법인명(명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인감	(인) 또는 서명

계	책임자	전결권자





아래의 동의사항은 카드발급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본 동의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거래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날”을 말한다.

##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기업/개인(신용) 정보	일반기업/개인정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사항, 사업자번호 기재사항 차량등록증 정보
	신용거래정보	발급정보(카드번호 포함), 여신성거래정보, 그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종별·유종별 지급단가, 연동 보조금거래정보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2 제공에 관한 사항**

(1) 유가보조금 운영업무의 목적으로 카드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트라이언소프트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법인 유류세 환급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 - 유류세 환급 복지 서비스 운영 및 정부부처 내부 감사자료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거래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날”을 말한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b>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기업/개인(신용) 정보	일반기업/개인정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사항, 사업자번호 기재사항 차량등록증 정보
	신용거래정보	발급정보(카드번호 포함), 여신성거래정보, 그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종별·유종별 지급단가, 연동 보조금거래정보
	위 <b>기업/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법인인감
--	---	---	---	-----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한카드(신한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국가기관, 지자체 및 외감법인은 제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개인신용정보 거래거절 및 철회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또는 금융거래 접수일로부터 3개월)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b>고유식별정보</b>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 정보, 보험계약 정보, 금융투자상품 정보, 그 외 금융거래 정보, 상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 정보, 연체 정보
	신용능력정보	직업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채무 정보, 납세실적 정보
	공공정보 등	인적 정보, 체납 정보, 채무조정 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 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신용조회기록,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위 <b>개인신용정보</b>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제공에 관한 사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한카드(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b>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b>일반개인정보</b>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b>신용거래정보</b> 여신성거래 정보, 그 외 금융거래 정보, 상거래 정보
	<b>신용도판단정보</b> 신용질서 문란 정보, 연체 정보
	<b>신용능력정보</b> 직업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채무 정보, 납세실적 정보
	<b>공공정보 등</b> 채무조정 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b>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b>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서명 또는 개인인감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공통: 법인카드 관리자 신분증 사본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 모든 첨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만 유효함

▶ **고객정보** ※ 법인카드 관리자(대리인)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법인카드 관리자 정보** (□신규 □변경 □추가)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대한민국 □( )
영문성명				국내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부서명	직위			이메일	@
직장전화 ( ) -	휴대전화 ( ) -			FAX	(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한카드(주)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카드 관리자 등록 및 수입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급 및 직위, 성별, 국적, 기타 이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법인카드관리자: (인) 또는 서명

**법인카드 관리자 신청**

위 \_\_\_\_\_ 은(는) 당사의 법인카드 관리자로서 귀사와의 법인카드 관련 거래에 있어 당사를 대리하여 아래의 수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당사는 법인카드 관리자의 퇴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법인카드 관리자의 권한정지 또는 변경 사유 발생시 즉시 그 사실을 귀사에 법인카드 관리자의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의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제 업무를 귀사와 법인카드 관리자가 거래하는 경우 당사는 거래의 유효함과 거래의 법적효과가 당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법인카드 관리자의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법인카드 관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카드 관리자 위임사항**

- ① 법인카드 신규 및 갱신 신청 ② 법인회원,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신청 ③ 법인카드 발급(재발급 및 추가발급 포함)
- ④ 법인카드 거래정지 및 거래정지 해제 신청 ⑤ 법인카드 수령 ⑥ 법인회원, 법인카드 제정보 변경 신청 ⑦ 법인 포인트 사용 신청
- ⑧ 법인회원, 법인카드 관련 각종 조회 신청 ⑨ 법인카드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신청

년	월	일	법인명(명판)	법인인감(법인사업자)	개인인감 또는 서명(개인사업자)
---	---	---	---------	-------------	-------------------

계	책임자	전결권자
---	-----	------

**법인인감 및 본인확인자**

※ 필수 기재 사항 (접수직원 작성)

(인) 또는 서명







관련 법령(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고객님의 제공한 정보는 법령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전 확인사항**

- 지분권자 또는 출연자가 존재하는 법인/단체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1. 법인/단체 소유자 확인", "2. 법인/단체 사실상 지배자 확인" <b>모두</b> 작성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법인/단체 사실상 지배자 확인" 작성 바랍니다.

**1. 법인/단체 소유자 확인**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로 작성을 같음합니다.  예  아니오

귀 법인/단체의 지분권자 또는 출연자 상위 5명을 지분율 순서대로 기재해주세요.

항목	구분	한글명(상호명)	영문명(상호명)	국적(본점 소재지)	지분율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유자 1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소유자 2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소유자 3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소유자 4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소유자 5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2. 법인/단체 사실상 지배자 확인**

① 법인/단체소유자 ② 실제소유자 ③ 대표자를 제외한 개인/법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가 존재합니까?

예  아니오 \* "예"로 선택하신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자를 기재해 주세요.(최대 5명)

※ 해당 개인,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 좌측 판단 기준(①~④) 확인 후 하단 "판단 기준"란에 체크

예) 구분 "①" 해당 시 → 하단 "판단 기준"에서 "①" 선택

구분	판단 기준
①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가 있는지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한 자가 있는지
③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④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지

순번	구분	한글명(상호명)	영문명(상호명)	국적(본점 소재지)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판단 기준
지배자 1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지배자 2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지배자 3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지배자 4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지배자 5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 )	법인/단체만 작성	YYYY.MM.DD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인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법인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신용카드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 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 제3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대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 제4조 (카드의 관리)

- ① 법인명의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며 회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 대체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사용자가 퇴사 시에는 법인카드를 회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제5조 (유효기간 및 갱신발급)

- ① 유효기간은 회원과의 예산계약기한 법인유효기간과 개별카드의 유효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② 법인유효기간은 매월 청구서에 기재되며, 사유로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의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법인유효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동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법인유효기간 갱신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회원 및 연대보증인으로 부터 법인유효기간 갱신동의 절차를 거쳐 법인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은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 ⑦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제6항에서 정하는 통지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⑧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意的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意的한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意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⑨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6조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 제7조 (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이동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 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②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③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④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⑤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⑥ 카드에 의한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⑦ 이인, 고소,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카드사 및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⑨ 유류 - 폐업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⑩ 회원이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계약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⑪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제28조제6항, 7항 또는 본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⑫ 회원과의 예산기한인 법인회원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⑬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정산망이 일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⑭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⑮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⑯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인,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카드사 및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⑰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⑱ 제5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⑳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0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12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소 등으로 통행로 지를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의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㉑ 제8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㉒ 카드사는 제8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동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㉓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따른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괄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㉔ 제10항 내지 제12항의 사유로 카드가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되거나 대체발급 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제3장 카드의 이용

#### 제8조 (카드의 이용)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명명카드의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는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유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명의카드에 한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인증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활반 호(이하 "기안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0조 (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의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회원의 이용한도는 법인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는 법인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회원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단, 제7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 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1조 (할부구입)

-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 걸쳐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로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협이 예상될 경우, 카드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 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강제,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에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 제20조 (회원의 책임)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익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는 회원의 이익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접)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징계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 있어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는 사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는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접시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우선 등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요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이하 본항에서 총칭하여 '회원'이라 함)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당도 각 목의 경우를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 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 제23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에게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비밀번호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는 합당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 제6장 개인정보보호

#### 제25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실적을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 및 사용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 자택·직장·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표자, 자동이체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와 과실 없이 회원 및 사용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대안할 합으로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및 사용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 합니다.

### 제7장 연대보증인 등

#### 제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① 카드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 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단, 고공임원은 제외) 또는 무한책임 사원
    - 라. 해당 법인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2. 회원이 조합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② 본조 제1항제1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다 및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본조 제3항에 의거 체결한 계약서상 보증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한 채무 및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조 제5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되며,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제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회원의 "영양"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의 퇴직, 폐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하여 처리된 것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요구에 따릅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조 제1항의 해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양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 연대보증인 없이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경우, 카드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결제능력 입증서류 청구)

- ① 카드는 카드발급 심사 및 이용한도 부여를 위하여 결제능력 입증서류를 회원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보유 재산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카드는 결제능력 입증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조 제2항 상의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결제능력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제8장 보칙

#### 제30조 (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가중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규조문대비료 포함)하고 회원에게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주소문대비료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팩스(FAX) 중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일 알려 드립니다.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를, 단기카드대출(연금서비스)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를 동 적용을 적용할 경우
  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하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드립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자 이후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 제34조 (관할 법원)

-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2021. 9. 25)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제4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

#### 제1조(시행일) (2023. 8. 1)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조(시행일) (2024. 2. 29)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조(시행일) (2025. 6. 1)

이 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조(시행일) (2026. 2. 27)

이 약관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를 말합니다.
-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 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제3조 (연회비 부과)

-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재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체크카드 법인회원 약관

### 제1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체크카드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에 법인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이하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라 함)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1회, 일, 월 한도 등)는 카드사가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위 한도 내에서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 ④ 카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마감시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카드의 이용대금은 거래 즉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제4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과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과 사용자는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 시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 조화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5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 ① 카드사가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카드를 현금 카드 겸용으로 등록하여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출과 관련 하여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 됩니다.
-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6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약관

1. 본인(예금주)이 지급하여야 할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지정계좌에서 신한카드(주)가 지정된 납기일(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 대채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 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이체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신한카드(주)의 청구금액 보다 부족하거나, 대채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니다.
4. 납기일이 동일할 수종의 출금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5.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한카드(주)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신한카드(주)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6.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귀행 및 신한카드(주)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며, 신한카드(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니다.
7. 자동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니다.

## OKCashBag 서비스 법인회원 특별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OKCashbag 회원인 법인이 회원으로서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 받는 외에 법인회원으로 특별하게 적용 받는 내용을 규정한 특별약관으로서, OKCashbag 법인회원이 SK플래닛이 제공하는 OKCashba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OKCashbag 법인회원 및 SK플래닛의 제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정의)

- ① OKCashbag 서비스가 탑재된 법인카드(이하 "OKCashbag법인카드"라 함)는 OKCashbag법인회원이 캐쉬백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SK플래닛이 승인한 신용카드로서 OKCashbag 제휴신용카드사가 발급합니다.
- ② "법인회원" (이하 "회원"이라 함)이라 함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SK플래닛의 OKCashbag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③ "카드사용자" (이하 "사용자"라 함)라 함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④ "OKCashbag제휴신용카드사" (이하 "제휴카드사"라 함)라 함은 SK플래닛과 캐쉬백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OKCashbag법인카드에 캐쉬백서비스를 탑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신용카드 업무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⑤ "법인 OKCashbag Reward 서비스" (이하 "법인 Reward 서비스"라 함)라 함은 OKCashbag법인카드 이용 기간 동안 법인회원에게 적립된(및 향후 적립될) 캐쉬백 포인트 중 가용포인트를 매월 자동 차감하고 차감된 OKCashbag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제휴카드사의 법인 Reward로 합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조 (OKCashbag 적립 서비스 특징)

- ① 법인회원에게 적립된 캐쉬백포인트는 당해 법인회원의 선택에 따라 법인회원, 사용자 및 제휴카드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캐쉬백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사용자는 OKCashbag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립된 캐쉬백포인트에 대하여 OKCashbag회원으로서 OKCashbag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OKCashba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적립 서비스의 형태는 법인회원의 동의하에 SK플래닛과 제휴카드사의 계약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4조 (OKCashbag Reward 서비스)

- ① 법인 Reward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회원에게는 OKCashbag법인카드 이용 기간 동안 법인회원에게 적립된(및 향후 적립될) 캐쉬백 포인트 중 가용포인트를 매월 자동 차감하고 차감된 OKCashbag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제휴카드사의 법인Reward로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단, SK플래닛과 제휴카드사의 계약을 통해 법인 Reward 제공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본 조 제①항의 Reward 서비스 제공을 위해 SK플래닛은 제휴카드사에 법인회원의 캐쉬백포인트 적립 내역(거래일자, 거래금액, 가맹점, 적립포인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SK플래닛은 법인 Reward서비스를 신청한 법인회원에게는 포인트 사용 및 현금상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5조 (적용)

본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며, 본 특별약관과 OK-Cashbag 서비스 이용약관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특별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